

의안번호	제 53 호
의 결 연 월 일	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최정훈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22년 9월 6일

# 충청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정훈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3
----------	----

발의연월일 : 2022년 9월 6일

발 의 자 : 최정훈, 노금식, 김성대,  
이옥규, 이태훈, 오영탁, 임영은

## 1. 제안사유

- 상위 법령인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인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의 지원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불명확한 조문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며, 용어 변경, 표기 정정 등 조례 정비를 통해 해당 조례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의 지원 대상 건축물의 용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12조)
  -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 “그 밖에 건축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도지사가 인정하는 용도” 내용 추가
- 시장·군수가 정하는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에 반영할 의견의 중요사항(안 제7조)과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에 대한 융자금 지원 우선 선정 및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융자금 제한내용 삭제(안 제13조)
- 중복지원을 제한하는 경우를 명백히 함(안 제16조)

## 3. 의안전문 : 붙임

## 4. 참고사항

-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 나. 관계법령 발체 : 붙임
- 다. 협의: 건축문화과
- 라. 비용추계 : 관계없음

## 충청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충청북도 도지사”를 “충청북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9조제2항제1호 중 “관련 충청북도 소속”을 “업무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한차례”를 “한 차례”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사퇴하고자 하는”을 “해촉을 원하는”으로 한다.

제12조를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보조 또는 융자지원”을 “지원”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한옥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2. 그 밖에 건축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도지사가 인정하는 용도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방법, 기준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2항으로 한다.

① 제12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액은 한옥신축에 소요되는 총공사비의 범위에서 최대 2천만원 한도로 한다.

제14조제2항 “제13조에 따른 지원액”을 “제13조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16조에 “다른 조례 등”을 “도의 다른 조례”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건축자산 유지 및 보수 지원 대상 사업자) ① (생략)</p> <p>② <u>충청북도 도지사</u>(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축자산의 유지 및 보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영 제6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로서 주된 영업소재지가 도내에 있는 경우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③ <u>사업비 지원과 관련된 사항은 시행규칙</u>-----.</p>	<p>제4조(건축자산 유지 및 보수 지원 대상 사업자) ① (현행과 같음)</p> <p>② <u>충청북도지사</u>----- ----- ----- ----- ----- ----- ----- ----- ----- -----.</p> <p>③ <u>제2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규칙</u>-----.</p>
<p>제5조(우수건축자산의 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우수건축자산의 관리에 필요한 기술이나 소요비용을 <u>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u>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제5조(우수건축자산의 지원) ① --- ----- ----- ----- <u>「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u>----- -----.</p> <p>② (현행과 같음)</p>

제7조(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에 반영할 의견의 중요사항) 영 제14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9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또는 제10호의 내용 중 주민의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사항
2. 그 밖에 시장·군수가 공고 및 열람 등의 절차를 다시 거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8조(생략)

제9조(협의체의 구성 등) ① (생략)

②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한옥 등 건축자산 관련 충청북도 소속 국장 또는 과장

2. ~ 4. (생략)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삭제>

제8조(현행과 같음)

제9조(협의체의 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1. ----- 업무담당 -----

2. ~ 4. (현행과 같음)

③ -----  
- 한 차례----- . <후단  
삭제>

④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3. (생략)

⑤ (생략)

제10조(생략)

제11조(생략)

제12조(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의 지원) 도지사는 영 제17조제2항제2호에 따라 한옥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한옥을 신축(개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한옥마을을 조성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지원 할 수 있다.

<신 설>

④ -----  
-----  
-----  
-----.

1. ----- 해촉을 원하는 -----

2. 3.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제10조(현행과 같음)

제11조(현행과 같음)

제12조(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의 지원) ① -----  
-----  
-----  
-----  
-----  
-----  
-----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한옥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신 설>

제13조(지원 한도액) ① 제12조에 따른 보조 및 용자지원 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조금 : 한옥신축 등 총공사비에 대하여 최대 2천만원까지

2. 용자금 :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을 다른 대상자에 우선하여 선정 지원 할 수 있으며, 한도액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 농어촌주택개량사업지침에 따른다. 단, 용자금 지원대상자는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지침에 따른 대상자이어야 한다.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보조금과 용자금은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다만, 제12조 중 한옥마을의 지원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과 용자금을 함께 지원할 수 있다.

2. 그 밖에 건축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도지사가 인정하는 용도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방법 및 기준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지원 한도액) ① 제12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액은 한옥신축에 소요되는 총공사비의 범위에서 최대 2천만원 한도로 한다.

1. <삭제>

2. <삭제>

② <삭제>



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과 용자금을 함께 지원하는 경우에는 총공사비 범위에서 보조금을 먼저 지원하고 나머지는 용자금으로 지원하되, 제1항 각 호의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생략)

제14조(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의 지원시기 등) ① (생략)

② 도지사는 제13조에 따른 지원액을 해당 공사가 완료된 후에 지급해야 한다.

제15조(건축문화 진흥 시책 추진)

① (생략)

제16조(중복 지원 제한) 도지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을 지급하거나 중복 지원할 수 없다.

제17조(생략)

제18조(생략)

③ <삭제>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의 지원시기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3조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

제15조(건축문화 진흥 시책 추진)

(현행 제1항과 같음)

제16조(중복 지원 제한) -----

-----도의 다른 조례에-----

-----

-----

-----

-----

제17조(현행과 같음)

제18조(현행과 같음)

## 관계법령 발췌

###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건축자산 유지 및 보수 관련 사업자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건축자산의 유지 및 보수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와 지원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우수건축자산의 지원 및 관리)**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우수건축자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우수건축자산의 관리에 필요한 기술이나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우수건축자산의 유지 상태를 확인하거나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24조(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의 지원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지원이나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기준 및 범위와 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옥마을이 새로 조성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도로, 전기, 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정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한옥 및 한옥마을에 대하여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관광공사가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에 우선 적용하거나 안내 및 홍보를 협조 요청할 수 있다.

- 제25조(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 지원신청 및 결정)** ①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 지원 신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및 지원내용을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 지원 신청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건축자산 유지 및 보수 관련 사업자에 대한 지원)** ①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2.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한 자
3.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을 한 자
4.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문화재수리업, 문화재실측설계업 또는 문화재감리업의 등록을 한 자
5. 그 밖에 건축자산의 유지 및 보수 관련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 내용 및 절차 등을 정하여 30일 이상의 기간 동안 관보,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 수립 등의 절차)** ① 건축자산 진흥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그 주요 내용을 둘 이

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주민이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의견을 제출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해당 의견을 검토하여 그 반영 여부를 의견 제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관리계획에 반영하려는 경우로서 그 내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일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관리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이 있을 때에는 미리 해당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관리계획을 확정하려면 공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⑦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관리계획을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주요 내용을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⑧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절차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7조(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의 지원)**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한옥마을은 일단(一團)의 범위 안에 한옥이 10호 이상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어야 한다.

②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기관 등을 통한 기술자문 및 감독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의 사업비 보조 및 용자
3.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18조(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 지원신청 및 결정)** 법 제25조제1항에서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1. 한옥 건축 지원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 가. 지원 신청서
  - 나. 한옥건축 계획서
  - 다. 대지의 범위 및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 라. 위치도 및 현황 사진
  - 마.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등 설계도서
  - 바. 사업비 지출 계획서(재정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사. 지원 필요성을 기재한 서류
2. 한옥마을 조성 지원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 가. 지원 신청서
  - 나. 한옥마을 조성 계획서
  - 다. 한옥마을 조성 대상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 라. 한옥마을 조성 대상지의 위치도 및 배치도
  - 마. 사업비 지출 계획서(재정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바. 지원 필요성을 기재한 서류

##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

### ○ 첨부제외 관련규정

-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제4항 제1호

### ○ 사 유

- 「충청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인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의 지원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불명확한 조문을 수정·정비함으로써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개정으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